

의안번호	2207056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5. 3. 10.
추계번호	24A6338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)	○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,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－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해 폐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또는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¹⁾에

1) 「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자”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.

따른 사업전환의 지원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11조의2 신설)

- 다만,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의 지급 또는 사업전환의 지원 등의 기준,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참고로,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도별 가스통계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2024년 기준으로 4,405개로 감소 추세임

[표 1]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추이

(단위: 개소)

	2020	2021	2022	2023	2024
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	4,550	4,511	4,489	4,461	4,405

자료: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통계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2. “사업전환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가.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
- 나.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
- 다.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·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·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